
**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
국비 지원 사업 공모 안내**

2023. 3.

체육지원팀

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안내

도내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장애인 체육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 3.

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

□ 공모개요

○ 공모사업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사업비	지원개소	개소별 지원액
합계	195,500	53	2,500 ~ 5,000
1.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	10,000	2	5,000
-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	10,000	2	5,000
2.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	185,500	51	1,500 ~ 4,000
- 생활체육교실 지원	138,000	35	2,000 ~ 4,000
- 동호인클럽 지원	47,500	16	1,500 ~ 3,000

※세부사업 공모 안내 확인

○ 추진일정

순	일정	추진내용	비고
1	3. 8.(수) ~ 3. 17.(금)	공모 접수	
3	3. 20.(월) ~ 3. 23.(목)	사업 선정 안내	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게시
4	3. 24.(금) ~ 3. 31.(금)	교부금 신청	
5	4. 3.(월) ~ 4. 7.(금)	사업비 교부	

○ 접수기간 : 2023. 3. 8.(수) ~ 3. 17.(금) *제출기한엄수

○ 접수처 : 시·군장애인체육회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팀으로 제출

○ 제출서류 : ① 공문 ② 사업별 사업계획서 *사업별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고

○ 접수방법

- 전자문서(그룹웨어) 및 담당자 메일 접수 ※팩스·우편 접수 불가
-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전화요망(접수 누락 방지)
- 시·군장애인체육회 전자문서 제출 必

□ 사업목적

-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과 기초 환경 조성
- 재가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증가를 위한 지역 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

□ 필독사항

-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미공개
-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대회개최 지원 사업 신청서 구분 제출 (접수누락방지)
- 공모 기준 및 사업계획서 양식 준수
- 지원 대상 확인 후 접수 (공모 대상이 아닌 사업에 지원 시 미 선정)
- 클럽 등 지역 지원 사업은 아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시군으로 문의

※ 시군 장애인체육회 현황

시군 및 단체	연락처	시군 및 단체	연락처
수원시장장애인체육회	031-247-9276	하남시장장애인체육회	031-796-5123
용인시장장애인체육회	031-335-5645	군포시장장애인체육회	031-399-8842
고양시장장애인체육회	031-912-6328	오산시장장애인체육회	031-376-6242
성남시장장애인체육회	031-758-0715	양주시장애인체육회	031-826-7974
화성시장장애인체육회	031-8059-0676	이천시장애인체육회	031-631-7939
부천시장애인체육회	032-613-4025	구리시장장애인체육회	031-556-4758
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	031-556-0993	안성시장장애인체육회	031-676-2688
안산시장애인체육회	031-481-8711	의왕시장장애인체육회	031-427-2727
평택시장장애인체육회	031-663-7330	포천시장애인체육회	031-538-4031
안양시장장애인체육회	031-388-2840	양평군장애인체육회	031-770-2633
시흥시장장애인체육회	070-4550-3568	여주시장애인체육회	031-886-0079
김포시장장애인체육회	031-983-8689	동두천장애인체육회	031-860-2748
파주시장애인체육회	031-945-9552	과천시장애인체육회	02-6953-1288
의정부시장장애인체육회	031-850-5757	가평군장애인체육회	031-8078-7975
광주시장애인체육회	031-764-2100	연천군장애인체육회	031-834-3101
광명시장장애인체육회	02-899-7825	-	-

□ 추진계획

○ 추진일정 및 절차

추진일정(예정)	추진내용	수행절차
		* 운영단체가 e-나라도움 사용 가능한 경우, 직접 수행 가능
3. 8.(수) ~ 3. 17.(금)	공모 접수	운영단체 → 시·군장애인체육회 → 도장애인체육회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
3. 20.(월) ~ 3. 23.(목)	사업 선정 및 통지	도장애인체육회 → 시·군장애인체육회 → 운영단체
		도장애인체육회 → 도가맹단체
3. 24.(금) ~ 3. 31.(금)	교부금 신청	운영단체 → 시·군장애인체육회 → 도장애인체육회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
4. 3.(월) ~ 4. 7.(금)	사업비 교부	도장애인체육회 → 시·군장애인체육회 → 운영단체
		도장애인체육회 → 도가맹단체
4. ~ 10.	사업운영	운영단체
4. ~ 10.	현장모니터링	도장애인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
11. 10.(금)까지	정산보고서 제출(e나라도움)	시·군장애인체육회(운영단체) → 회계법인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
11. 24.(금)까지	회계검증완료	회계법인 ↔ 시·군장애인체육회(운영단체)
		회계법인 ↔ 도가맹단체
11. 30.(목)까지	정산보고마감	시·군(운영단체)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11. 30.(목) ~ 12. 7.(목)	정산서류보완	시·군(운영단체)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12. 7.(목) ~ 12. 14.(목)	잔액 및 이자반납(e나라도움)	시·군(운영단체)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		도가맹단체 → 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12. 21.(목)	최종정산보고	도장애인체육회 → 대한장애인체육회

※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 : 최소 운영 1개월 전 교부금 신청 /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

○ 관리체계(업무분장)

구분	관리체계(업무분장)					
	사업 안내	예산 지원	실적 관리	운영·관리	정산	사업마감
대한장애인체육회	계획 공지	사업비 교부	실적 취합·관리	현장 점검	취합·관리	정산확정통지
↓ ↑	↓ ↑	↓	↓ ↑	↓	↑	↓
경기도장애인체육회	취합신청	직접집행·재교부	실적 취합·제출	운영 / 점검	자료 취합	정산확정통지
↓ ↑	↓ ↑	↓	↓ ↑	↓	↑	↓
재교부단체	공모	사업비 집행	실적 제출	사업 운영	자료 제출	마감·정리

II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 사업별 세부내용

-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과 기초 환경 조성
- 도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친목·교류의 장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1.
- 사업장소 : 경기도 일원
- 사업비 : 195,500천원(국비)
- 추진방침
 - 지원대상 : 시·군장애인체육회, 도가맹경기단체, 도내유형별단체 등
 - 지원규모 : 개소당 2,500천원 ~ 5,000천원 지원
- 공모사업

구분	세부사업	단위사업비	지원개소	공모대상
대한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지원	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	5,000,000	2	시·군, 도가맹
	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	1,500,000~ 4,000,000	51	시·군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체육시설 등

○ 운영일정

순번	추진내용	해당사업	일정(예정)
1	공모접수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3. 8.(수) ~ 3. 17.(금)
2	공모 선정 결과 안내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3. 20.(월) ~ 3. 23.(목)
3	교부금신청	지역생활체육대회	운영 1개월 전까지
		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3. 24.(금) ~ 3. 31.(금) (별도 안내)
4	사업비교부	지역생활체육대회	운영 3주 전까지
		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4. 3.(월) ~ 4. 7.(금) (별도 안내)
5	사업운영 / 현장모니터링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4월 ~ 10월
6	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사업종료 후 30일 이내
7	정산검토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4월 ~ 12월
8	정산완료안내 및 잔액반납	지역생활체육대회 /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	4월 ~ 12월

II-1

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1.
- 사업형태 : 공모사업
- 사업비 : 10,000천원(국비)
- 지원규모 : 2개소 지원 / 개소별 5,000천원
- 공모대상 : 시군장애인체육회, 道가맹단체

□ 지원항목

세 목	항 목	금 액	비 고
일반 수용비	심판수당	120,000원 이내	1일 기준 / 자격증 및 심판확인서 제출 ※ 수료증 및 기타종목연관성 자료
	기록원수당	100,000원 이내	1일 기준 / 자격증 불필요
	운영요원수당	100,000원 이내	1일 기준 / 자격증 불필요
	진행물품비	실비	대회진행 관련 사무용품, 비품, 경기운영용품 등
	급량비	8,000원	1식 기준 / 임원 및 스텝 지원 지양
	숙박비	40,000원	1인 1박 기준 / 2일 이상 대회 운영 시 지원 ※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편성
	대회기념품	10,000원	1인 기준 / 지원금의 20% 이내 ※ 시비 및 자부담 편성 요망
	홍보물제작	실비	책자 또는 현수막, 팸플릿, 포스터 등 대회장소 부착물
	시상품제작	실비	메달, 트로피 또는 상장 등 비현금성 시상품(지원금의 30%이내) ※ 상품 및 시상금으로는 편성 불가
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가입	실비	상해보험 의무 가입(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) ※ 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 편성
	우편요금 등	실비	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
임차료	시설이용료	실비	각종 시설의 임차료
	진행물품	실비	경기용품 및 그 외 대회에 필요한 물품, 각종 장비의 임차료
	차량임차	실비	대회운영차량 및 응급차량 임차
기타운영비	의료약품구입	실비	의료비(소모성 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)
자부담	기타운영비	실비	시상금, 계좌이체 수수료 등

◆ 별첨 ① ◆ 지역생활체육대회 평가기준

평가항목(100점)	세부내용				
예산편성 (15점)	○ 지방바자부담 편성 -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예산 대비 추가 예산 확보 비율				
	30% 이상	24% 이상	18% 이상	12% 이상	6%이하
	15점	12점	9점	6점	3점
참여인원 (15점)	○ 참여인원 - 선수(장애인선수, 비장애인선수), 심판, 운영요원				
	140명 이상	120명 이상	100명 이상	80명 이상	60명 이상
	15점	12점	9점	6점	3점
대회운영 (30점)	○ 대회운영 ① 상황실 운영(대회 운영본부, 시군운영본부 등) ② 개회식 운영 ③ 우천시 대책 ④ 의전운영 ⑤ 홍보운영 ⑥ 종목 운영의 전문성 확보(가맹 경기단체 주관), ⑦ 정식규격 경기장 확보 선수 ⑧ 선수 대가휴게공간 확보 ⑨ 대회 홈페이지 운영 ⑩ 심판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⑪ 자원봉사자 운영 ⑫ 교통 및 주차관리 운영 ⑬ 기타				
	12개 이상	11개 이상	10개 이상	9개 이상	8개 이하
	30점	24점	18점	12점	6점
장애인편의시설 (10점)	○ 장애인편의시설(10점) ① 장애인전용 화장실 ② 장애인전용 샤워실 ③ 경사로 ④ 유도블럭 ⑤ 점자표시판 ⑥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⑦ 기타				
	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
	10	8	6	4	2
유사대회개최실적 (10점)	○ 최근 5년 이내 유사대회 개최실적				
	5회 이상	4회	3회	2회	1회 이하
	10	8	6	4	2
	* 사업계획서 내 대회개최 실적 첨부				
안전 및 방역대책 (20점)	○ 안전 및 방역 대책(20점) ① 응급 차량 및 구조사 배치 ② 비상연락망 구축(내외부) ③ 의료기관 연계 ④ 안전 및 방역 메뉴얼 ⑤ 안전 및 방역장비 배치 ⑥ 상해보험가입 ⑦ 기타 *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뉴얼 별도 첨부				
	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
	20	16	12	8	4

* 사업계획서 내의 내용과 사업종료 후 운영실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향후년도 사업 신청 시 페널티 부여

II-2

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1.
- 사업형태 : 공모사업
- 사업비 : 185,500천원(국비)
- 지원규모 : 51개소(생활체육교실 35개소, 동호인클럽 16개소)
- 사업내용 :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지원
- 공모대상 : 시군장애인체육회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체육시설 운영단체
 -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 운영단체 등은 시군장애인체육회 통해 신청
- ※ 단, 자체적으로 e-나라도움 사용 및 월별 실적 관리가 가능한 단체에 한해 직접 신청
- 운영기준 : 주1회, 6개월 이상 운영 / 최소 24회 이상
 - ※ e-나라도움 사용 필수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통해 **월별 실적 관리 필수**
- 지원규모 : 개소당 2,000천원~4,000천원(교실), 1,500천원~3,000천원(클럽)

□ 지원내용

세부사업	내 용	총사업비	개소별 사업비	지원 개소	운영 횟수
생활체육교실	① 지체장애교실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 시각장애교실 ⑤ 이식장애교실 ⑥ 중복 및 기타장애교실 ⑦ 아동교실(만13세 미만) ⑧ 청소년교실(만13세~19세 미만) ⑨ 성인교실(만19세 이상) ⑩ 어르신교실(만65세 이상) ⑪ 여성교실 ⑫ 수중운동교실 ⑬ 어울림교실	138,000천원	2,000천원 ~ 4,000천원	35	주1회, 6개월 이상 *최소 24회 이상
생활체육 동호인클럽	- 장애인가명종목, 인정종목 동호회 - 국제대회 경기종목 동호회 등	47,500천원	1,500천원 ~ 3,000천원	16	주1회, 6개월 이상

□ 사업별 지원기준

○ 생활체육교실

구분	사업구성	주요 기준	비고
생활체육교실	① 지체장애교실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 시각장애교실 ⑤ 이식장애교실 ⑥ 중복 및 기타장애교실 ⑦ 아동교실 ⑧ 청소년교실 ⑨ 성인교실 ⑩ 어르신교실 ⑪ 여성교실 ⑫ 수중운동교실 ⑬ 어울림교실	- 교실 당 주1회 6개월 이상 운영(최소 24회 이상) - 운영 교실 전체 초보자교실 필수 - 지도자당 수업참가자 5~7명 권장 *복수 지도자 활용 가능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우선 배치 - 사회통합을 위한 어울림교실 권장 *가족, 친구, 형제, 보호자, 활동보조 등	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개인용품 지원가능 *인당 단가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

○ 생활체육 동호인클럽

구분	사업내용	주요 기준	비고
생활체육 동호인클럽	동호인클럽 운영비 지원	-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 *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클럽 지원 제외 - 공공스포츠클럽 내 동호회 중복 지원 불가 -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- 구성인원(매니저 및 운영요원 포함 최소 15명 이상) *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	

□ 사업별 지원항목

○ 생활체육교실

세목	항목	금액	지원내용	비고
일반수용비	지도자 수당	일10만원 이내	1일 기준 / 해당 종목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	*수화통역사 별도 협의
		일5만원 이내	1일 기준 / 해당 종목 지도자 자격증 소지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운영기관 소속직원 *소속 기관 보수규정 근거 하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	*교실에 해당 *근무 중 지도시간 인정 불가
	운영요원 수당	일3만원 이내	1일 기준 *예산교부단체 및 유관기관에 지급 불가	
	운동용품	실비	공동용품 지원 *개인용품 지원 불가	*단가 30만원 이하 *물품대장 제출
	홍보물	실비	현수막, 팸플릿, 포스터	
공공요금	상해보험	실비	상해보험 의무가입 *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 편성	
임차료	시설임차료	실비	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 등	
	운동용품	실비	용기구장비 임차비	
기타운영비	의료약품	실비	소모성 의료약품, 방역용품 구입	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실비	간식, 음료 등	*개소 당 20만원 이하 *식사금지

○ 생활체육 동호인클럽

세목	항목	금액	지원내용	비고
일반 수용비	매니저 수당	월15만원 이내	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	
	운영요원 수당	월3만원 이내	1일 기준 *예산교부단체 및 유관기관에 지급 불가	
	운동용품	실비	공동용품 지원 *개인용품 지원 불가	*단가 30만원 이하 *물품대장 제출
	홍보물	실비	현수막, 팸플릿, 포스터	
임차료	시설임차료	실비	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 등	
	운동용품	실비	용기구·장비 임차비	
기타운영비	의료약품	실비	소모성 의료약품, 방역용품 구입	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실비	간식, 음료 등	*개소 당 20만원 이하 *식사금지

□ 선정기준

○ 생활체육교실 선정기준

- (1순위) 필수운영 개소 수 이하인 경우, 전체 선정
- ※ 단, 필수운영 개소 수를 초과한 경우, 점수를 계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(2순위) 장애유형별 목표비율에 근거하여, 우선 선정

참가자 장애유형	지체장애 *뇌병변 포함	지적장애	청각장애	시각장애
목표비율	40% 이상	20% 이상	10% 이상	10% 이상

- (3순위) 어울림(교실) 또는 중복되지 않는 신규종목(교실 또는 동호인클럽)
- (4순위) 1~3순위에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별첨② 참고)

○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선정기준 : 위 2~4순위 순으로 선정(별첨③ 참고)

○ 필수운영 개소 수 및 우대사항

세부사업	개소별 예산	운영 개소	지원액	총지원액	필수운영 개소 수	우대	
생활체육교실	4,000천원	31개소	124,000천원	138,000천원	① 지체장애교실	-	어울림교실 또는 신규종목교실
					② 지적장애교실	-	
					③ 청각장애교실	-	
					④ 시각장애교실	-	
					⑤ 이식장애교실	1개소	
					⑥ 중복 및 기타장애교실	-	
	3,500천원	4개소	14,000천원		⑦ 아동교실	-	
					⑧ 청소년교실	-	
					⑨ 성인교실	-	
					⑩ 어르신교실	8개소	
					⑪ 여성교실	2개소	
					⑫ 수중운동교실	4개소	
					⑬ 어울림교실	-	

◆ 별첨 ② ◆ 생활체육교실 평가기준

평가항목(100점)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참여인원 (30점)	○ 참여인원(30점) ※ 통합정보시스템 의무 등록 必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30점</td> <td>24점</td> <td>18점</td> <td>12점</td> <td>6점</td> </tr> <tr> <td>30명 이상</td> <td>19명 ~ 24명</td> <td>13명 ~ 18명</td> <td>7명 ~ 12명</td> <td>6명 이하</td> </tr> </table> ※ 중증장애인 1명 당 2명 인정					30점	24점	18점	12점	6점	30명 이상	19명 ~ 24명	13명 ~ 18명	7명 ~ 12명	6명 이하										
30점	24점	18점	12점	6점																					
30명 이상	19명 ~ 24명	13명 ~ 18명	7명 ~ 12명	6명 이하																					
사업운영 적합성 (30점)	○ 운영횟수(20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0점</td> <td>16점</td> <td>12점</td> <td>8점</td> <td>4점</td> </tr> <tr> <td>30회 이상</td> <td>28회 ~ 39회</td> <td>26회 ~ 27회</td> <td>24회 ~ 25회</td> <td>24회 미만</td> </tr> </table> ○ 장애인편의시설(10점) ① 장애인전용 화장실 또는 샤워실 ② 경사로 ③ 유도블럭 ④ 점자표시판 ⑤ 기타(명시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10점</td> <td>8점</td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4개 이상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1개</td> <td>0개</td> </tr> </table>					20점	16점	12점	8점	4점	30회 이상	28회 ~ 39회	26회 ~ 27회	24회 ~ 25회	24회 미만	10점	8점	6점	4점	2점	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
20점	16점	12점	8점	4점																					
30회 이상	28회 ~ 39회	26회 ~ 27회	24회 ~ 25회	24회 미만																					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													
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																					
홍보방안 (15점)	○ 사업홍보 계획(15점) - 현수막 또는 배너(필수) - 홍보 1개당 3점씩 부여 ※ 신문기사, 인터넷기사, 홈페이지홍보, SNS홍보, 블로그홍보, 카페홍보, 기타(명시) 등 ※ 최소 1회 이상 게재 권고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 및 방역대책 (20점)	○ 안전 및 방역 대책(20점) ① 상해보험가입 ② 비상연락망 구축(내외부) ③ 의료기관 연계 ④ 안전 및 방역 매뉴얼 ⑤ 안전 및 방역장비 배치 ⑥ 기타 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뉴얼 별도 첨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0점</td> <td>4개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4점</td> </tr> <tr> <td>5개 이상</td> <td>16</td> <td>12</td> <td>8</td> <td>1개 이하</td> </tr> </table>					20점	4개	3개	2개	4점	5개 이상	16	12	8	1개 이하										
20점	4개	3개	2개	4점																					
5개 이상	16	12	8	1개 이하																					
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	○ 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5점</td> <td>0점</td> </tr> <tr> <td>전년도 선정</td> <td>전년도 미선정</td> </tr> </table>					5점	0점	전년도 선정	전년도 미선정																
5점	0점																								
전년도 선정	전년도 미선정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사업계획서 내의 내용과 사업종료 후 운영실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향후년도 사업 신청 시 페널티 부여

◆ 별첨 ③ ◆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평가기준

평가항목(100점)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
참여인원 (30점)	<p>○ 참여인원(30점) ※ 통합정보시스템 의무 등록 必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30점</td> <td>24점</td> <td>18점</td> <td>12점</td> <td>6점</td> </tr> <tr> <td>24명 이상</td> <td>21명 ~ 23명</td> <td>18명 ~ 20명</td> <td>15명 ~ 17명</td> <td>15명 이하</td> </tr> </table> <p>※ 중증장애인 1명 당 2명 인정</p>	30점	24점	18점	12점	6점	24명 이상	21명 ~ 23명	18명 ~ 20명	15명 ~ 17명	15명 이하										
30점	24점	18점	12점	6점																	
24명 이상	21명 ~ 23명	18명 ~ 20명	15명 ~ 17명	15명 이하																	
사업운영 적합성 (30점)	<p>○ 운영횟수(20점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20점</td> <td>16점</td> <td>12점</td> <td>8점</td> <td>4점</td> </tr> <tr> <td>30회 이상</td> <td>28회 ~ 39회</td> <td>26회 ~ 27회</td> <td>24회 ~ 25회</td> <td>24회 미만</td> </tr> </table> <p>○ 장애인편의시설(10점) ① 장애인전용 화장실 또는 샤워실 ② 경사로 ③ 유도블럭 ④ 점자표시판 ⑤ 기타(명시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점</td> <td>8점</td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4개 이상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1개</td> <td>0개</td> </tr> </table>	20점	16점	12점	8점	4점	30회 이상	28회 ~ 39회	26회 ~ 27회	24회 ~ 25회	24회 미만	10점	8점	6점	4점	2점	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
20점	16점	12점	8점	4점																	
30회 이상	28회 ~ 39회	26회 ~ 27회	24회 ~ 25회	24회 미만																	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									
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																	
홍보방안 (15점)	<p>○ 사업홍보 계획(15점) - 현수막 또는 배너(필수) - 홍보 1개당 3점씩 부여 ※ 신문기사, 인터넷기사, 홈페이지홍보, SNS홍보, 블로그홍보, 카페홍보, 기타(명시) 등 ※ 최소 1회 이상 게재 권고</p>																				
안전 및 방역대책 (20점)	<p>○ 안전 및 방역 대책(20점) ① 상해보험가입 ② 비상연락망 구축(내외부) ③ 의료기관 연계 ④ 안전 및 방역 매뉴얼 ⑤ 안전 및 방역장비 배치 ⑥ 기타 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뉴얼 별도 첨부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5개 이상</td> <td>4개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1개 이하</td> </tr> <tr> <td>20</td> <td>16</td> <td>12</td> <td>8</td> <td>4</td> </tr> </table>	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	20	16	12	8	4										
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																	
20	16	12	8	4																	
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	<p>○ 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5점</td> <td>0점</td> </tr> <tr> <td>전년도 선정</td> <td>전년도 미선정</td> </tr> </table>	5점	0점	전년도 선정	전년도 미선정																
5점	0점																				
전년도 선정	전년도 미선정																				

※ 사업계획서 내의 내용과 사업종료 후 운영실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향후년도 사업 신청 시 페널티 부여